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Summary in Korean



연금 보고서 2011: OECD 회원국 및 G20 국가 퇴직연금제도

국어 개요

- 제 4 판 연금 보고서에서는 연금과 퇴직, 평균수명을 주제로 다룬다. 고령화와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개시 연령을 연장한 국가가 많았는데 연금과 평균수명 간에 자동적인 관계를 도입한 국가도 몇몇 있었다. 또한 최근 연금개혁 패키지에서는 은퇴보다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렇지만 노년층 근로자를 위해 충분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사안은 연금개시 연령, 은퇴 행위, 퇴직을 장려하는 연금 인센티브, 노년층 근로자에 대한 수요, 연금과 평균수명 연계 등의 주제로 구성된 5 개의 별도의 장에서 심도 있게 살핀다.
- 금번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최신화하고 오늘날의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소득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아울러 34 개의 지표를 폭넓게 제공하여 각국의 퇴직소득제도 설계, 연금 수급 자격, 노년층 소득, 연금제도의 재정실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여건, 그리고 사적 연금 등을 살핀다.
- 이전의 보고서에 비해 본고에서는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4 개의 신규 OECD 회원국을 추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등 G20 의 주요 경제국들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EU 27 개국의 자료를 추가하면 본고에서는 총 43 개 국가 경제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연금개혁에 대한 논란과 특히 연금개시연령 연장에 대한 논란은 2009년 6월에 이전 연금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계속 머릿기사로 다뤄진 내용이였다. 따라서 2011년도 보고서에서 연금, 은퇴, 평균수명,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주제로 다룬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5개의 장으로 구성된 Part I 중 "연금개시연령과 기대수명, 1950-2050"을 다룬 1 장에서는 OECD 국가의 거의 절반이 이미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기 시작했거나 앞으로 높일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18개국에서 높아지고 남성은 14개국에서 높아질 것이다. 2050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연금수급연령은 남녀 모두 약 65세에 이를 것인데 이는 2010년에 남자, 여자의 증가폭이 각각 2.5년, 4년 정도임을 뜻한다.

20세기 후반 반세기 동안 기대수명이 거의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 결과, 은퇴생활을 하며 보내는 기간이 늘게 되었다. 1960-1993년 사이, 국민연금수급 연령대의 평균 기대여명이 13.4년에서 16.5년으로 늘었다. 1993년 여성의 예상된 은퇴기간은 1960년보다 4.8년 늘어난 21.6년을 육박했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 추이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 그렇지만 은퇴기간 증가의 1/3이 연금수급연령을 낮춘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OECD 중 10개국 1950-2010년 사이 어느 시점에서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을 낮추고 13개국은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낮춘 경우였다.

기대수명이 앞으로 계속 늘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망이 내다보고 있다. UN은 2050년에 일반 퇴직연령대의 기대여명이 남자는 20.3년, 여자는 24.5년까지 늘 것이라고 전망한다. 머지않아 퇴직연령 연장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로 향후 40년간의 은퇴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남녀 모두의 퇴직연령을 높인 국가는 5개에 그쳤으면 또 다른 4개국은 여성만의 퇴직연령을 높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반 퇴직연령대에 한한 분석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일반퇴직연령에 이르기 전에 은퇴한다. 이러한 사실이 제 2 장 "퇴직 및 노년층 근로 동향"에 드러난다. 70-80년대에 걸쳐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떠나는 실제 연령이 일반적으로 낮아졌다. 그렇지만 조기퇴직의 장기화 추세는 남성 경우에 90년대 중반에 그쳤고 여성은 약간 후에 그쳤다. 그럼에도 2002-07년 OECD 국에서 노동시장을 떠나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남성, 여성이 각각 63.5세, 62.5세였는데 이는 60년대 후반보다 4-5세 낮은 수준이었다. 2050년까지 예상된 평균수명 증가 추세에 발맞추려면 실제 퇴직연령을 남자는 약 66.5세, 여자는 거의 66세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직면한 도전이 어느 정도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 2개의 장에서는 근로연령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주제로 다룬다. 첫 장에서는 "공급 측면"을 살핍으로써 연금제도에 포함된 퇴직 및 근로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장에서는 "수요 측면"을 살펴 노년층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재정 인센티브가 퇴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 만큼 3장에서 논의하는 "퇴직을 장려하는 연금 인센티브"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또 한편으로는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더 많이 일하여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연금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어찌면 본인의 잘못도 없이 조기 퇴직을 강요받는 이들 또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연금 개혁에서 퇴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중심요소가 되었는데 OECD 국가 중 거의 절반이 이러한 영역에서 조치를 취한 경우였다. 이러한 변화는 조기퇴직 자격요건 강화, 조기퇴직자의 연금 혜택 대폭 축소, 일반 정년연령 이후에 은퇴한 자들의 연금 혜택 증대 등으로 나타난다. 3 장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효과적이었고 이제는 조기퇴직을 적극 장려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OECD 국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제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9가지의 정책권고사항을 통해 더 오래 일하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더 오래 일하는 데 있어 수요 측면에 장애가 있다면 근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설계한 연금 개혁은 효과가 덜할 수 있다. 4 장에서는 "노년층의 구직 및 일자리 유지 돕기"를 목표로 한 일련의 정책을 살핀다. 특히 노년층 근로자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과 관련하여 고용주 측의 연령차별주의적인 행동과 같은 유형의 장벽이 있다. 연령차별금지법과 공공캠페인은 향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효과를 보았던 대책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노년층 근로자 고용으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이 문제로 남는다. 때때로 고용주들은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조기퇴직을 활용한다.

노년층 근로자의 취업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 이따금 노년층의 직업 능력은 낮게 평가되고 직업 훈련은 여전히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다.

연금개시연령 연장과 관련된 논쟁에서 되풀이되는 테마 가운데 노년층 근로자가 늘수록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실제로 20 대 초반 인구의 취업률은 50 대 후반 인구의 취업률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관련된 성향 조사 결과, 노년층 근로자가 청년 근로자의 취업 전망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클수록 노년층이나 청년 근로자의 고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5 장에서는 연금과 기대수명의 문제를 되살핀다.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절반이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연금과 평균수명 변화 간의 자동 링크를 제공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연금정책에 나타난 주요 변화다.

첫째, 공적연금을 대체 또는 보완하고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많이 있었다. 둘째,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명목계정” 방식으로 전환한 국가가 몇몇 있었다. 셋째, 부부는 수급액 규모나 연금수령 자격, 그리고 기대수명 간에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 외에 자발적인 사적연금은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의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지급해야 할 연금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점점 이러한 비용 부담은 개인 퇴직자들이 연금혜택이 축소되는 형태로 떠안게 될 것이다. 5 장에서는 기대수명의 예측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연금을 기대수명에 연계시킨” 정책을 평가한다. 이어서 기대수명이 주요 전망치보다 늦게, 혹은 빠르게 늘어남으로써 연금수령자격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계속하여 Part I 의 5 개 장에서는 OECD 국가들이 인구 노령화가 가중시킨 정부 예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고 평가한다. 연금제도의 변수 중 가장 눈에 띄고 널리 이해된 변수인 정년연령의 연장이 신문의 1 면을 장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년연령 연장은 연금, 퇴직, 기대수명을 둘러싼 내용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Part II 에서는 이전에 3 차례 발간한 연금보고서에서 조사한 “연금정책 지표”를 최신화하고 이전 보고서보다 18 개 지표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가능한 경우에는 G20 으로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OECD 회원국이 아닌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까지 다루고 있다.

일단 퇴직연금제도 설계를 살핌으로써 매우 다양한 퇴직연금제를 설명하는 분류법을 제공한다(Part II). 연금제도의 주요 변수와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국간 비교가 용이해진다.

이러한 변수와 규칙은 소득 수준별로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자격을 모델화하는 데에 사용된다(Part II.2). 대부분의 지표가 법정 연금제를 살피지만 특유의 자발적 사적연금이 널리 적용되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사적 연금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금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세제와 이러한 세제가 근로자 시절의 생활수준에 비해 노후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연금수령자격에 대한 분석은 오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령액의 가치를 감안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이다. Part II.3 에서는 평균 소득, 소득원, 빈곤위험도 등의 지표를 통해 현재 은퇴 연령층의 재정 상태를 살펴본다.

Part II.4 에서는 개개의 상황을 분석하고 퇴직연금제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연금 지출, 의무연금 기여율,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총액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Part II.5 에서는 퇴직연금제 운영에 필요한 여건과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출산율과 같은 인구통계 수치와 평균소득 등을 나타낸다. 끝으로 Part II.6 에서는 사적연금기금과 공적연금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